

수 신 : 회원제위

참 조 :

제 목 :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안내

---

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, 기획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·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공동주택관리법(법률 제21630호, 일부개정)
  - 개정·공포일 : '26. 5.12(화) ※ 시행일 : 공포 후 2년
  - 주요내용
    -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,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(제37조제3항)
    - ⇒ 현행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활용되었던 「하자판정 기준」의 대외적 구속력을 확보하여, 하자 관련 법원 소송 등 분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

붙임 전자관보(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)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 
회 장 오 성



---

담당 경영지원부장 유제연 기획관리실장 이을예

시행 전건협 강원 제 370 호 (2026. 5. 19)

우 2437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4층 / gangwon.kosca.or.kr

전화 033-254-4324 전송 033-257-4324 / 전자우편 [kosca32@kosca.or.kr](mailto:kosca32@kosca.or.kr)